

# 국경없는의사회 행동 서약

2018년 6월 집행위원회 승인

## 들어가며

---

국경없는의사회 (이하 MSF)는 책임 있는 조직이며, 이는 구성원들의 책임 있는 행동에 기반한다. 직원과 고용주는 상호보완적으로 조직 내의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예방, 발견, 해결한다. MSF 스태프는 환자를 포함해 현장에서 MSF의 지원을 받는 이들에게 아래의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MSF 스태프(현장 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 직원을 포함한 직원 전부, 자원봉사자, 일용직 노동자 등) 및 현장 활동 파트너(컨설턴트, 방문객) 전원은 아래 서약을 이해하고 업무 시간 및 사생활에서 이를 성실히 준수한다. MSF는 조직 내에 이와 관련한 다양한 신고 및 보고 채널을 갖추고 있으며, 아래 서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수반된다.

이 행동 서약은 최소한의 행동 기준이며, 개인의 근무 환경과 활동 영역에 따라 세부적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행동 서약

---

1. MSF 스태프와 현장 활동 파트너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인종, 견해, 생활양식, 성별, 성적 취향, 사회경제적 배경, 출신, 종교, 신념, 그 밖에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정보를 기반으로 환자, 동료, 현지 지역사회 일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2. MSF 스태프와 현장 활동 파트너는 그 누구에게도 신체적인 폭력(폭행, 성폭력, 그 외 모든 형태의 신체적 폭력) 혹은 심리적 폭력(집단 따돌림, 권력 남용, 괴롭힘, 차별, 특정인에 대한 편애)을 가하지 않는다.
3. MSF 스태프와 현장 활동 파트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인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용인하지 않는다. 이는 사회 경제적, 성적인 모든 상황을 포함한다. 모든 현장 활동 중 성 매수를 포함해 성행위에 대한 대가로 현물, 각종 혜택, 그 밖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4. MSF 스태프와 현장 활동 파트너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학대, 모든 형태의 아동 착취, 폭력을 용납하지 않으며 아동과 성관계를 맺지 않는다.<sup>1</sup>

---

<sup>1</sup> '아동'의 정의에 관하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 —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를 따른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 결의안 44/25에서 채택되어 1990년 9월 2일부터 시행되었고 서명, 비준, 가입에 열려 있다.)

5. MSF 스태프와 현장 활동 파트너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MSF의 모든 구성원은 MSF가 소유한 자원(부지, 물품, 돈, 평판, 이미지 등)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며, MSF와 MSF가 지원하는 지역 주민들과 MSF의 이익을 중시해야 한다.

**[Note] 번역 참고사항**

Sexual aggression: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피해자가 신체적, 심리적으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폭력)

Harassment: 괴롭힘

Physical abuse: 신체적 학대

Child abuse: 아동에 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

Child exploitation: 아동에게 노동을 시켜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아동을 활용해 성적 또는 감정적 만족을 취하는 등 모든 형태의 착취